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03
----------	-------

발의연월일 : 2026. 9. 4.

발 의 자 : 황 희 · 문진석 · 한민수
이소영 · 이연희 · 이용선
안규백 · 김종민 · 민홍철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과 문화 진흥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을 설립하여 문화 분야 데이터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과 지능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문화서비스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 분야 데이터의 통합 관리·활용이 필수적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문화데이터 생성·이용 등을 촉진하고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 진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문화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화데이터(문화유산, 예술작품, 공연·전시 정보 등 문화 전반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제공·연계·활용 등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화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을 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과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 관련 분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문화데이터 생성·연계·이용 촉진 및 문화데이터 활용 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4(문화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화데이터(문화유산, 예술작품, 공연·전시 정보 등 문화 전반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제공·연계·활용 등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u>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화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국가</u>

기관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을 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과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 관련 분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문화데이터 생성·연계·이용 촉진 및 문화데이터 활용 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